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61 및 2024카기233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이훈주, 송병남, 윤영일, 이국녕,
최창현, 서영태, 이형원, 김영환, 김영희, 이동경, 하지영, 윤영미, 김필성, 박선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송성현,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

피고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2.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파두가 <별지 2>기재 일반 공모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하여 2023. 11. 8. 이후 공모가인 31,000원 이하로 매도
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회사 파두 주식을 2024.

3. 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

3.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
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2024.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주진암

